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건축물의 옥상녹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

충청북도 건축물의 옥상녹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350
----------	-----

2023. 7. 13.(목)
행 정 문 화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 출 자 : 오영탁 의원 등 8인
- 나. 제출일자 : 2023년 7월 4일
- 다. 회부일자 : 2023년 7월 5일
- 라. 상정일자 : 2023년 7월 13일
 -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- 마. 주요내용
 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오영탁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충청북도 건축물의 용도 활용을 통한 녹지공간 확보 및 쾌적한 환경경관 조성을 위해 건축물의 옥상녹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옥상녹화 활성화 사업(안 제5조)
- 옥상녹화 기준(안 제6조)

- 지원 대상(안 제7조)
- 옥상녹화의 사업비 지원 기준 등(안 제8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서정호)

가. 제출배경

- 옥상녹화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밀집된 도시의 토양 및 녹지공간으로 활용에 관한 연구 및 지원이 있었음.
- 최근 건축물의 옥상을 녹지공간 및 반사열 흡수원 대응책으로 활용하려는 관심이 대두되고 있으며,
- 옥상녹화 효과는 토양생태계 복원, 건축물 상층부 단열효과, 도시열섬 현상 완화, 우수유출 일시 완화, 공기 정화, 경관 향상, 휴식 공간 제공 등의 장점이 있음.
- 서울특별시, 강원도, 전라남도 등 전국적으로 옥상녹화 보급 및 활용을 도시 숲 가꾸기의 일환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, 충청북도도 이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함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본 조례안은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조 문	규 정 사 항	조 문	규 정 사 항
제1조	목적	제7조	지원대상
제2조	정의	제8조	옥상녹화의 사업비 지원 기준 등
제3조	도지사의 책무	제9조	옥상녹화 유지·관리
제4조	적용범위	제10조	시설점검
제5조	옥상녹화 활성화 사업	제11조	준용
제6조	옥상녹화 기준		

○ 안 제4조(적용범위)

- 「주택법」, 「건축법」 등에 따른 건축물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그 의무 이행을 위해 실시하는 조경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

○ 안 제5조(옥상녹화 활성화 사업)

- 건축물의 옥상녹화사업
- 옥상녹화 설계기준 및 권장설계도서 작성·보급
- 그 밖에 옥상녹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○ 안 제6조(옥상녹화 기준)

- 옥상면적, 각종 설비나 유지·관리 조건,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넓은 면적 확보

○ 안 제7조(지원대상)

- 도 및 시·군 소유 건축물
-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 소유 건축물
- 공공성이 높은 다중이용건축물

○ 안 제8조(옥상녹화의 사업비 지원 기준 등)

- 옥상녹화 면적이 옥상면적의 2분의 1 이상 사업(최소면적 30제곱미터)
- 10년 이내에 사업비 지원을 재신청할 수 없다
- 현장 실사를 통하여 사업의 완료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지급

○ 안 제9조(옥상녹화 유지·관리)

- 옥상녹화사업을 지원 받은 관리자는 원형이 보존되도록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해야 함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건축물 옥상녹화의 활성화를 통하여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,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건축물의 옥상녹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음.
- 또한 녹지환경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조례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건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건축물의 옥상녹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」

충청북도 건축물의 옥상녹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건축물의 단열성능 향상을 통한 녹지공간 확보와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건축물의 옥상녹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건축물”이란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.
2. “옥상녹화”란 사람의 출입 및 이용 가능한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붕 등의 인공지반(이하 “옥상”이라 한다) 위에 토양층을 새롭게 형성하여 식물을 식재하거나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.
3. “식재”란 조경면적에 수목이나 잔디·초화류 등의 식물을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여 심는 것을 말한다.
4. “조경시설”이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·벤치·환경조형물·정원석·휴게·여가·수경·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.
5. “옥상면적”이란 건축물의 지붕에서 승강기탑, 계단탑, 장식탑, 물탱크, 냉각탑, 태양전지판 등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.
6. “관리자”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건축물의

옥상녹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.

-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옥상녹화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.

제4조(적용범위) ① 이 조례는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옥상에 시행하는 녹화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「주택법」, 「건축법」 등에 따른 건축물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그 의무 이행을 위해 실시하는 조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.

- ② 옥상녹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제5조(옥상녹화 활성화 사업) 도지사는 옥상녹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건축물의 옥상녹화사업
2. 옥상녹화 설계기준 및 권장설계도서 작성·보급
3. 그 밖에 옥상녹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옥상녹화 기준) 건축물의 옥상녹화를 하는 때에는 옥상면적, 각종 설비나 유지·관리 조건,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넓은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.

제7조(지원대상) 옥상녹화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조안전과 방수성능 등을 확보한 건축물로 한다.

1. 도 및 시·군 소유 건축물
2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 소유 건축물
3. 공공성이 높은 다중이용건축물

제8조(옥상녹화의 사업비 지원 기준 등) ① 옥상녹화사업의 지원 기준은 옥

상녹화 면적이 옥상면적의 2분의 1이상(최소 면적은 30제곱미터로 한다)인 사업으로 한다.

② 옥상녹화사업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사업비를 지원받은 건축물은 10년 이내에 사업비 지원을 재신청할 수 없다.

④ 도지사는 현장 실사를 통하여 사업의 완료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만 한다.

제9조(옥상녹화 유지·관리) 옥상녹화사업을 지원 받은 관리자는 해당 조정시설 등의 원형이 보존되도록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.

제10조(시설점검) ① 도지사는 옥상녹화사업 지원 건축물에 대하여 사업비 지원 후 연 1회 이상 유지·관리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·관리해야 한다.

제11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옥상녹화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「조경기준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

□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

제27조(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(이하 “그린리모델링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받을 그린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대상·범위 및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□ 건축법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

2. “건축물”이란 토지에 정착(定着)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, 지하나 고가(高架)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·공연장·점포·차고·창고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충청북도 건축물의 용도 활용을 통한 녹지공간 확보와 쾌적한 환경경관 조성을 위해 건축물의 옥상녹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함

2.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 제1호

3. 사 유

- 해당 사업의 사업수요 정도와 그에 따라 추정되는 사업량을 추계하는 것이 정량적으로 불확실하며,
- 지원금액 또한 현재로서 정율, 정액 등 확정된 사항이 없기에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를 제출함.